C - 114 - 2020

- (2) 관리감독자는 덤프와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작업(도로 주행 작업은 제외 한다)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·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다음 내용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 - (가)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, 지반의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한 사전조사
 - (나) 사용 장비의 종류와 성능,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
 - (다)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등
 - (라) 작업지휘자와 유도자의 지정 및 적정위치 여부 등
- (3) 관리감독자는 자동차 등록증 보유와 운전원의 자격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4) 덤프 운전원 자격은 1종 대형면허, 화물자동차 운전원 자격은 12톤 미만 차량은 1종 보통면허와 화물운송자격증, 12톤 이상 차량은 1종 대형면허와 화물운송자격증, 트레일러 운전원은 1종 특수면허, 트레일러면허와 화물운송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.
- (5) 관리감독자는 덤프 및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등이 출고시와 달리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주된 용도 외의 사용(다른 차량의 견인 행위 등)을 금지하여야 한다.

6.1.2 작업시 고려사항

- (1) 덤프 및 화물자동차 작업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·위해 요인을 찾아내어 근로자의 부상 및 질병의 발생 가능성(빈도)과 중대성(강도)을 추정·결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2) 위험성평가는「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53호「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지침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
- (3) 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 선정시 고려사항.
- (가) 작업여건, 작업물량, 적재물의 부피와 중량, 싣거나 내리는 장비의 조합 등을